



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
EN PROPRIÉTÉ INTELLECTUELLE
INTERNATIONAL FEDERATION OF
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S
INTERNATIONALE FÖDERATION
VON PATENTANWÄLTEN

2015. 4. 13. 및 18.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이사회 결의

“특허청의 정보공개 요건”

국제변리사연맹, **FICPI**는 전세계 자유직업을 널리 대변하는 단체로서, 2015. 4. 13. 및 18.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 총회 및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통과시켰다:

특허 출원 심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, 일부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다른 특허청에서의 대응되는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규정(공개 요건)을 채택하고 있음을 **주목**

이러한 공개 요건을 위한 기본 근거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허청에 의한 특허 출원 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**추가 주목**

특허청들은 그들 각각의 특허 검색 및 심사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,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개발하였으며, 특허청이 요구하는 대부분 정보는 이미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이 **관찰**

이러한 특허청의 공개 요건은 출원인에게 불필요하고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이 **추가 관찰**

이러한 부담이 사용자들, 특히 개인 발명자, 중소기업, 대학에 있어 특허 제도의 접근가능성을 낮추게 됨을 **강조**

특허청의 이러한 요건은 출원인이 요구된 정보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인 및 제3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시킴을 **추가 강조**

한편, 선택관청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, 그 특허청은 실제로 어떤 “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은 선택관청”이 “출원인에게 다른 선택관청에서의 동일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와 관계된 어떠한 서류의 사본 또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”을 금지하는 PCT 제 42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**주목**

정보공개 요건이 있는 관할의 입법자 및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부담을 지우는 대신,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재 기능을 인지하고 이용할 것을 **촉구**

특허청은 PCT 챕터 2에 의해 심사된 특허 출원의 경우, PCT 제 42조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**추가 촉구**